

의안번호	제 84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환경보전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0월 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의안 번호	844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제3조)
-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10조)
-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안 제11조~제14조)
-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5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충청북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도민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주요 환경보건 정책의 변경,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수립한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

고,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 담당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9조(적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① 도민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유해인

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계획 수립 필요
-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참석, 안전검토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3. 관련조문

-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안 제2조제1항)
-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안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환경보건계획 수립 연구용역 : 법령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반영
- 위원회 수당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 따름

나. 추계 결과

-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1식 = 100,000천원
 -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연5,000천원
 - 출석수당 : 16명×연2회×100천원=3,200천원
 - 원거리수당 : 5명×연2회× 30천원= 300천원
2명×연2회× 50천원= 200천원
 - 안전심사수당 : 16명×연1회× 30천원= 480천원
16명×연1회× 50천원= 800천원
- ※ 최초연도는 연1회 개최로 2,500천원

다. 재원 조달방안

-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 도비 100%
-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이일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102,500	5,000	5,000	5,000	5,000	122,500
환경보건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000	-	-	-	-	100,000
위원회 수당 (정책기획관 Pool)	2,500	5,000	5,000	5,000	5,000	22,500
재원 조달	102,500	5,000	5,000	5,000	5,000	122,500
자체 수입	102,500	5,000	5,000	5,000	5,000	122,500
도비 일반회계						

관련법령 발췌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

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